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최혁진의원 ·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86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최혁진 · 김우영 · 김문수
김태년 · 민형배 · 조계원
이재강 · 노종면 · 김남희
박성준 · 복기왕 · 김동아
박홍배 · 양문석 · 안도걸
이언주 · 이주희 · 염태영
이수진 · 송재봉 · 박민규
김 윤 · 김준혁 · 이광희
이강일 의원(25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주거,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있어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본권의 보장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의 조화도 고려되어야 함.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기본권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협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및 디지털 접근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조성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모든 국민은 돌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6조).

다.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및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안 제9조).

라. 국가는 인공지능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두어 기본권 보장 정책에 대한 조정 등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15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불평등과 격차를 넘어 상생과 연대의 공동체 속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와 인공지능·혁신기술이 조화롭게 국민 모두의 행복과 상생·연대 기반의 기본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기본사회는 정의·민주주의·역량·지속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인간의 존엄을 중심으로 공공성과 자치를 조화시켜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공동체적 연대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생활권”이란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및 디지털 접근의 권리를 말한다.
3. “사회연대경제”란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말하며,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모두의 인공지능(AI for All)”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 전반에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술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모두의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비전과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사회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와 자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③ 국가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공동체 기반의 경제와 정책 생태계를 구축한다.

- ④ 국가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본사회 관련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국가는 기본사회 실현 및 기본생활권 보장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제6조(기본생활권 보장)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생활권을 가진다.

② 국가는 생애주기 별로 국민에게 돌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참여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③ 국가는 빈곤, 고립, 정보격차 등으로 인해 기본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돌봄을 받을 권리 등 보장) ① 국가는 돌봄을 공공서비스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AI 학습 환경을 보편화하며,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한 교육·돌봄 혁신 모델을 확대한다.

제8조(주거와 의료의 보편 보장) ① 국가는 국민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주택의 질적 기준을 민간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② 국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응급의료의 공공 제공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며,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9조(사회연대경제의 촉진) ① 국가는 사회연대경제를 모두의 기본사회의 주요 축으로 인정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립과 고용, 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② 국가는 공공조달·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재투자를 촉진하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제10조(모두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① 국가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교육, 의료, 교통 등 모든 영역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②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안전 기준을 확립한다.

③ 국가는 “모두의 AI”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누구나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AI 격차 해소와 역량 강화를 보장한다.

제3장 기본사회위원회 등

제11조(기본사회위원회) ①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장기 정책과제

2.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조정
3.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정책의 통합 추진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
5.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 ① 국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행복과 기본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인공지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인공지능위원회는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포용, AI 교육,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③ 인공지능위원회는 매년 인공지능 기본사회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제13조(기본사회 종합계획) ① 정부는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기본사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사회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 기본생활권 실현 목표
2.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반 공공서비스 확충 방안
3. 인공지능·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전략
4. 환경·기후·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5. 평가 및 점검체계 구축

제14조(시·도별 기본사회 종합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기본사회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 기본사회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 기본사회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기본생활권 실현 목표
2.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확충 방안
3. 시·도별 인공지능·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전략
4. 시·도별 환경·기후·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5. 시·도별 평가 및 점검체계 구축

제4장 보칙

제15조(기본사회 정책 평가 및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및 협력) ① 국가는 새로운 기본사회 모델 발굴을 위해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정책 연구 및 혁신

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적극 실험·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위촉, 사무기구의 설치 행위 등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